

#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 및 수요 조사

2022. 10



# Contents

---

SECTION I.	조사개요	02
SECTION II.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주요 내용	03
SECTION III.	조사결과	05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05
	2.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 의향	10
	3. 정책 과제	14
SECTION IV.	요약 및 시사점	16

---

표 목차	<표 1>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 정도	05
	<표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06
	<표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07
	<표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절차 수립 현황	08
	<표 4-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절차 수립 현황(규모별)	09
	<표 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계획) 시 애로사항	10
	<표 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외부전문가 도움 필요 여부	11
	<표 7>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 의향	11
	<표 7-1>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 의향 없는 이유	12
	<표 8>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콘텐츠 필요 정도	13
	<표 9> 안전보건관리시스템 필요 기능	13
	<표 1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14

# I

## 조사 개요

### ○ 조사목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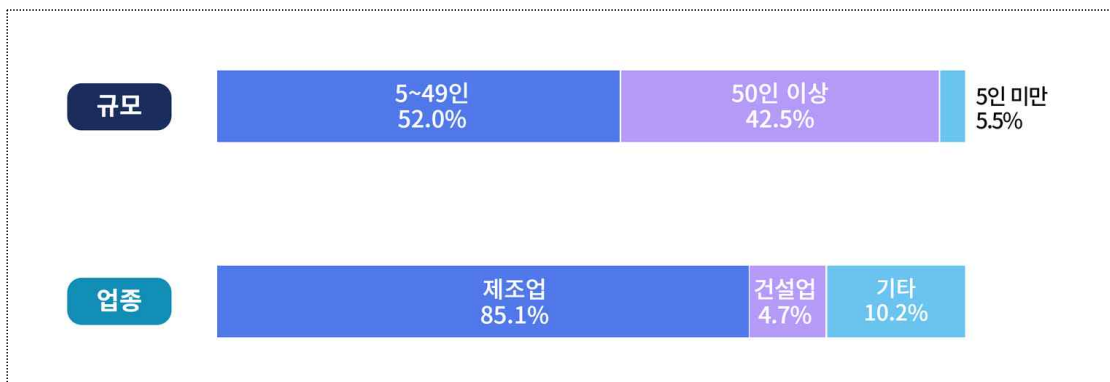
-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실태와 기업인 의견 등을 파악하여, 정부 정책 수립에 의견을 개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조사기간 : 2022. 8. 23(화) ~ 9. 16(금)

○ 조사방법 : 이메일 조사

○ 응답기업 : 인천지역 소재 기업 127개사

### ○ 응답기업 분포



### ○ 응답항목 : 13가지 문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애로사항
-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 의향
- 정책과제 등

## II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주요 내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함.<sup>1)</sup>
- **적용범위**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2022. 1. 27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2024. 1. 27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함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202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산업재해 관련」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1.8,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관계부처 합동, 2022.1, 「중대재해처벌법 관계부처 해설 모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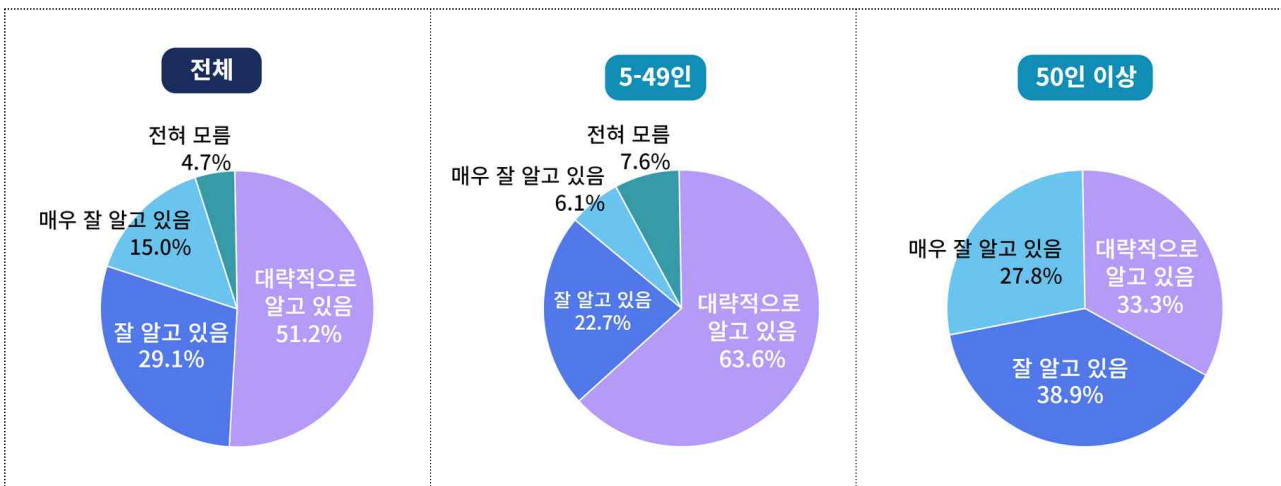
- 1) 경영자 리더십(목표 설정, 인력·시설·장비 등 배정, 구성원 권한·책임 설정 등)
- 2) 근로자의 참여(안전보건 정보 공개, 참여 절차 마련, 문화 조성 등)
- 3) 위험요인 파악(위험요인 정보 관리, 위험 기계·설비, 장소·작업형태별 위험요인 파악 등)
- 4)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위험성 평가, 위험요인별 제거·대체·통제방안 검토, 대책수립 및 이행, 교육훈련 실시 등)
- 5) 비상조치계획 수립(재해발생 시나리오 작성 및 조치계획 수립, 주기적 훈련 등)
-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산업재해 예방능력 갖춘 사업주 선정 절차·기준 수립, 관리 절차 마련 등)
- 7) 정기적 평가·개선(성과 평가, 체계 점검 및 개선 등)

### Ⅲ 조사 결과

####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 인천지역 기업 127개사를 대상으로 한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명시된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하여 응답기업의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잘 알고 있는**’ 기업은 44.1%(‘잘 알고 있음’(29.1%), ‘매우 잘 알고 있음’(15.0%))로 나타남. 응답기업의 51.2%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기업도 4.7%를 차지함.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 정도는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규모 기업은 66.7%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나**’, 2024년부터 법 적용 대상인 ‘5-49인’ 규모 기업은 28.8%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함.  
5-49인 : ‘**대략적으로 알고 있음**’(63.6%) > ‘**잘 알고 있음**’(28.8%)(‘잘 알고 있음’ 22.7%, ‘매우 잘 알고 있음’ 6.1%) > ‘**전혀 모름**’(7.6%)  
50인 이상 : ‘**잘 알고 있음**’(66.7%)(‘잘 알고 있음’ 38.9%, ‘매우 잘 알고 있음’ 27.8%), > ‘**대략적으로 알고 있음**’(33.3%)

<표 1>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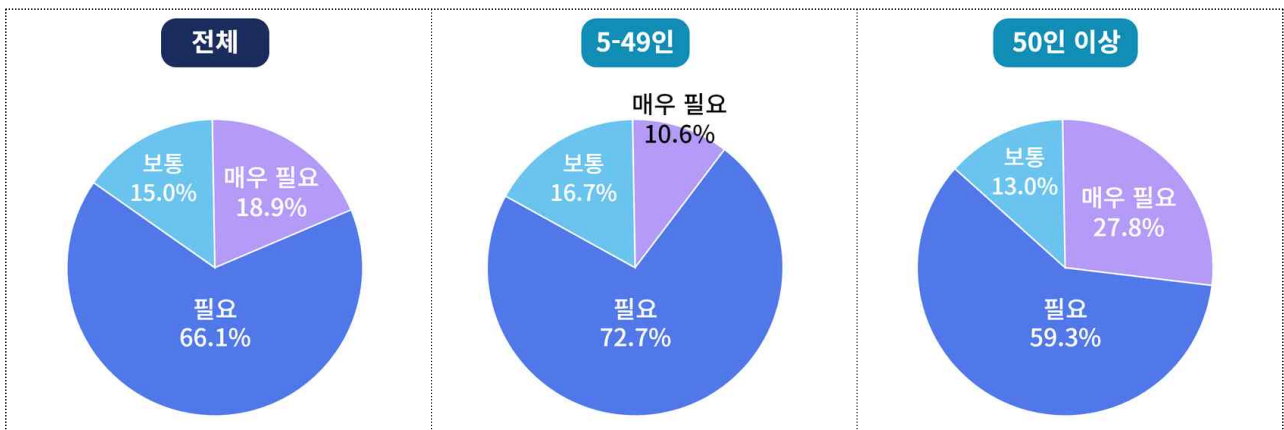


- 응답기업의 85.0%(‘필요’(66.1%), ‘매우 필요’(18.9%))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5-49인’(83.3%), ‘50인 이상’(87.1%) 규모 기업 모두 필요성을 크게 체감하고 있었음. 특히, ‘5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27.8%)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5-49인’ 규모 기업 비중(10.6%)보다 높았음.

5-49인 : 필요(83.3%)(‘필요’(72.7%), ‘매우 필요’(10.6%)) > ‘보통’(16.7%)

50인 이상 : 필요(87.1%)(필요’(59.3%), ‘매우 필요’(27.8%)) > ‘보통’(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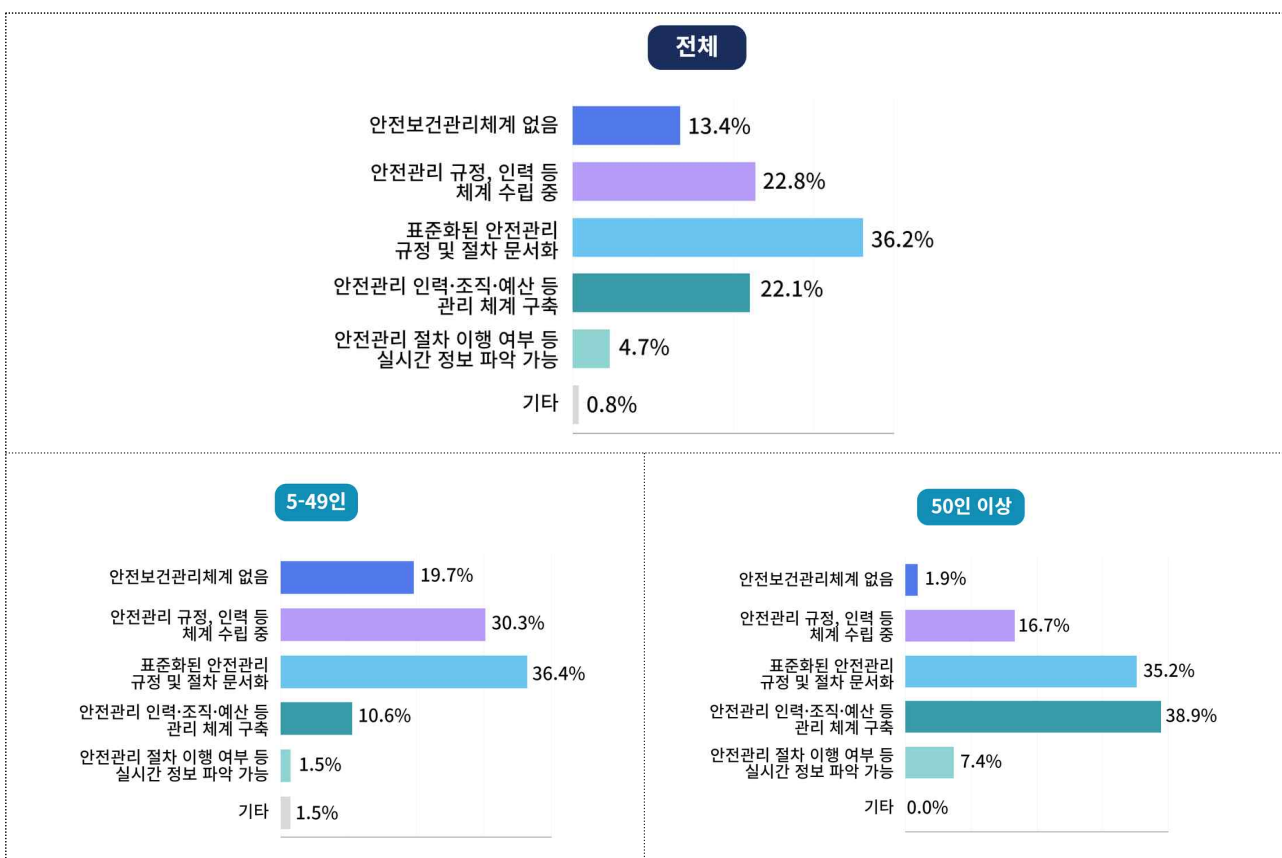
<표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을 살펴보면,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가 문서화’ 되어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36.2%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안전관리 인력·조직·예산 등 관리 체계 구축’(22.1%), ‘안전관리 절차 이행 여부 등 실시간 정보 파악 가능’(4.7%) 순으로 나타남. ‘안전관리 규정, 인력 등 체계 수립 중’인 기업도 22.8%로 조사되었으며,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13.4%를 차지함.
- 기업 규모별로는, ‘5-49인’ 규모 기업의 50.0%(‘안전관리 규정, 인력 등 체계 수립 중’(30.3%), ‘안전보건관리체계 없음’(19.7%))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업은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 문서화’(36.4%) 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50인 이상’ 규모 기업은 81.5%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한 것으로 나타남(‘안전관리 인력·조직·예산 등 관리 체계 구축’(38.9%),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 문서화’(35.2%), ‘안전관리 절차 이행 여부 등 실시간 정보 파악 가능’(7.4%)). 또한, ‘안전관리 인력·조직·예산 등 관리 체계 구축’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8.9%를 차지함.

- 5-49인 :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 문서화’(36.4%) > ‘안전관리 규정, 인력 등 체계 수립 중’(30.3%) > ‘안전보건관리체계 없음’(19.7%) > ‘안전관리 인력·조직·예산 등 관리 체계 구축(10.6%) > ‘안전관리 절차 이행 여부 등 실시간 정보 파악 가능’(1.5%) > 기타(1.5%)
- 50인 이상 : ‘안전관리 인력·조직·예산 등 관리 체계 구축(38.9%) >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 문서화’(35.2%) > ‘안전관리 규정, 인력 등 체계 수립 중’(16.7%) > ‘안전관리 절차 이행 여부 등 실시간 정보 파악 가능’(7.4%) > ‘안전보건관리체계 없음’(1.9%)

**<표 3>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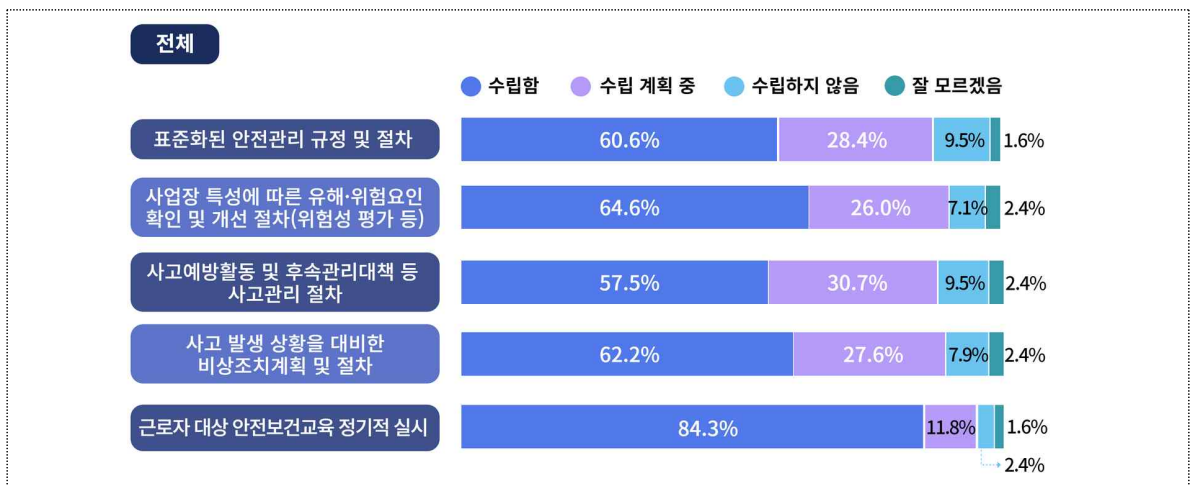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수립해야하는 주요 절차의 수립 현황을 보면, 응답기업은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절차’(60.6%),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64.6%), ‘사고관리 절차’(57.5%), ‘비상조치계획 및 절차’(62.6%), ‘정기적 안전보건교육’(84.3%)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조사됨.
- 하지만, 주요 절차를 ‘수립 계획 중’이거나 ‘수립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 ‘수립함’(60.6%) > ‘수립 계획 중’(28.4%) > ‘수립하지 않음’(9.5%) > ‘잘 모르겠음’(1.6%)
-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수립함’(64.6%) > ‘수립 계획 중’(26.0%) > ‘수립하지 않음’(7.1%) > ‘잘 모르겠음’(2.4%)
- 「사고예방활동 및 후속관리대책 등 사고관리 절차」 ‘수립함’(57.5%) > ‘수립 계획 중’(30.7%) > ‘수립하지 않음’(9.5%) > ‘잘 모르겠음’(2.4%)
- 「사고 발생 상황을 대비한 비상조치계획 및 절차」 ‘수립함’(62.2%) > ‘수립 계획 중’(27.6%) > ‘수립하지 않음’(7.9%) > ‘잘 모르겠음’(2.4%)
-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정기적 실시」 ‘수립함’(84.3%) > ‘수립 계획 중’(11.8%) > ‘수립하지 않음’(2.4%) > ‘잘 모르겠음’(1.6%)

**<표 4>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절차 수립 현황**



○ 기업 규모별로는, 5-49인 규모 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 절차를 수립한 기업의 비중이, 50인 이상 규모 기업보다 낮게 나타남.

-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
  - 5-49인 : ‘수립함’(48.5%) > ‘수립 계획 중’(37.9%) > ‘수립하지 않음’(12.1%) > ‘잘 모르겠음’(1.5%)
  - 50인 이상 : ‘수립함’(79.6%) > ‘수립 계획 중’(16.7%) > ‘수립하지 않음’(3.7%)
-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 5-49인 : ‘수립함’(57.6%) > ‘수립 계획 중’(30.3%) > ‘수립하지 않음’(9.1%) > ‘잘 모르겠음’(3.0%)
  - 50인 이상 : ‘수립함’(77.8%) > ‘수립 계획 중’(18.5%) > ‘수립하지 않음’(3.7%)
- 「사고예방활동 및 후속관리대책 등 사고관리 절차」
  - 5-49인 : ‘수립함’(51.5%) > ‘수립 계획 중’(33.3%) > ‘수립하지 않음’(12.1%) > ‘잘 모르겠음’(3.0%)
  - 50인 이상 : ‘수립함’(66.7%) > ‘수립 계획 중’(29.6%) > ‘수립하지 않음’(3.7%)

- 「사고 발생 상황을 대비한 비상조치계획 및 절차」

• 5-49인 : ‘수립함’(54.5%) > ‘수립 계획 중’(30.3%) > ‘수립하지 않음’(12.1%)> ‘잘 모르겠음’(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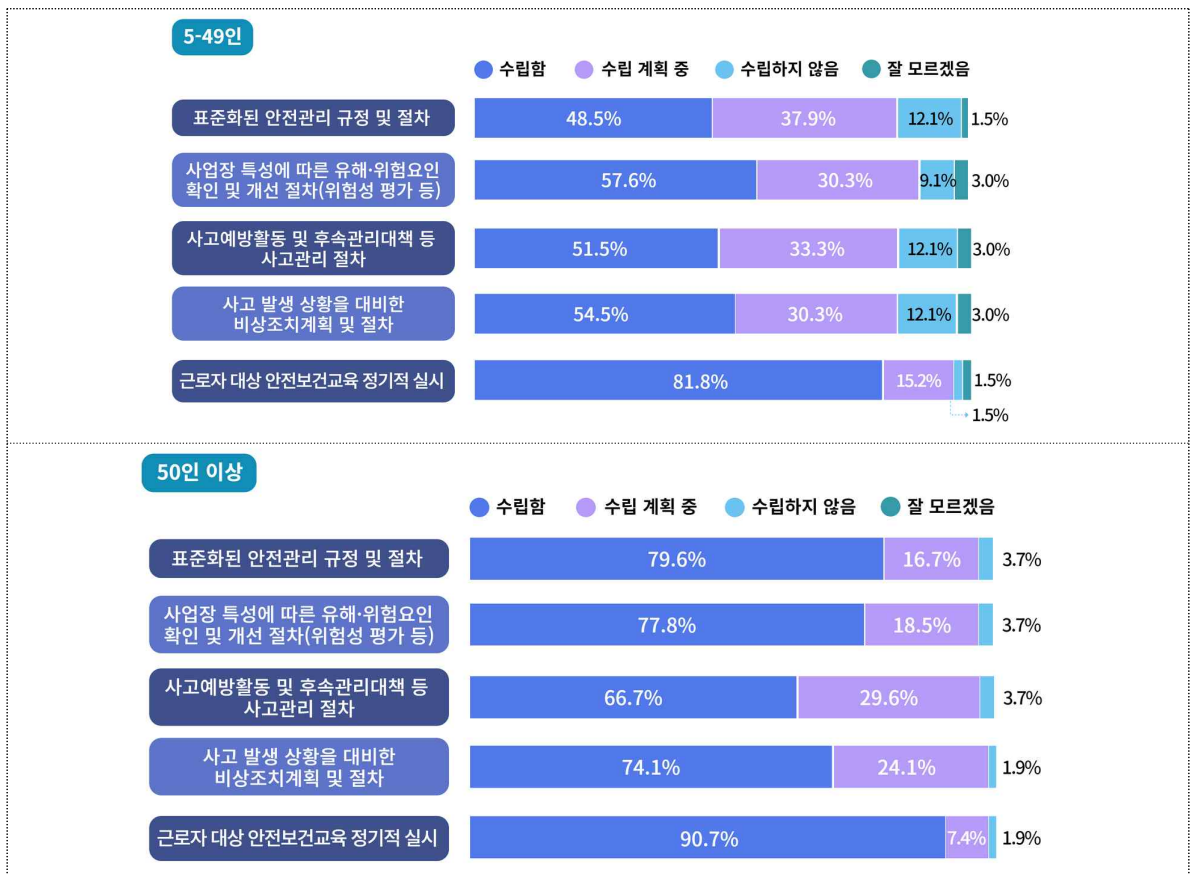
• 50인 이상 : ‘수립함’(74.1%) > ‘수립 계획 중’(24.1%) > ‘수립하지 않음’(1.9%)

-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정기적 실시」

• 5-49인 : ‘수립함’(81.8%) > ‘수립 계획 중’(15.2%) > ‘수립하지 않음’(1.5%) > ‘잘 모르겠음’(1.5%)

• 50인 이상 : ‘수립함’(90.7%) > ‘수립 계획 중’(7.4%) > ‘수립하지 않음’(1.9%)

<표 4-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절차 수립 현황 (규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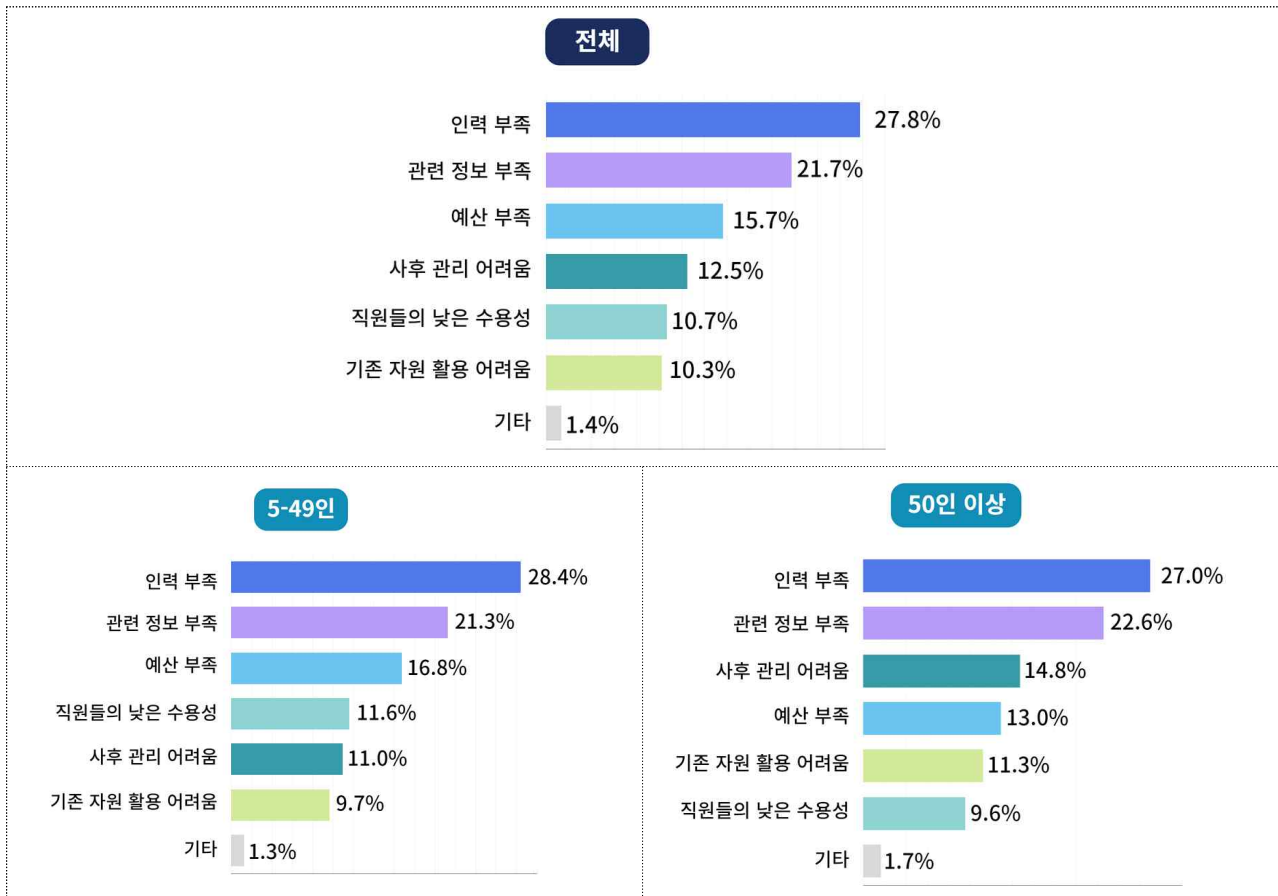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또는 계획단계에서 응답기업의 27.8%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관련 정보 부족’(21.7%), ‘예산 부족’(15.7%), ‘사후 관리 어려움’(12.5%), ‘직원들의 낮은 수용성’(10.7%), ‘기존 자원 활용 어려움’(10.3%), 기타(1.4%) 이유로 애로를 겪고 있었음.

○ 기업 규모별로는, ‘5-49인’, ‘50인 이상’ 규모 기업 모두 ‘인력 부족’, ‘관련 정보 부족’을 주요 애로로 꼽았음. 다음으로 ‘5-49인’ 규모 기업은 ‘예산 부족’으로 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나, ‘50인 이상’ 규모 기업은 ‘사후 관리’ 문제로 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응답함.

- 5-49인 : ‘인력 부족’(28.4%) > ‘관련 정보 부족’(21.3%) > ‘예산 부족’(16.8%) > ‘직원들의 낮은 수용성’(11.6%) > ‘사후 관리 어려움’(11.0%) > ‘기존 자원 활용 어려움’(9.7%) > 기타(1.3%)
- 50인 이상 : ‘인력 부족’(27.0%) > ‘관련 정보 부족’(22.6%) > ‘사후 관리 어려움’(14.8%) > ‘예산 부족’(13.0%) > ‘기존 자원 활용 어려움’(11.3%) > ‘직원들의 낮은 수용성’(9.6%) > 기타(1.7%)

**<표 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계획) 시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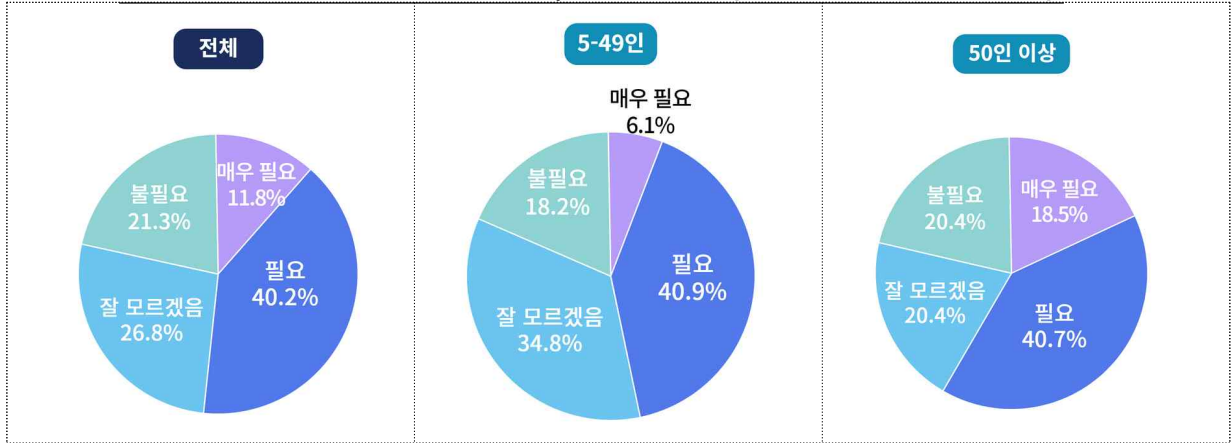


## 2.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 의향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52.0%(‘필요’(40.2%), ‘매우 필요’(11.8%))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음’(26.8%), ‘불필요’(21.3%) 순으로 조사됨.
- 기업 규모별로는 ‘5-49인’ 규모 기업은 47.0%가, ‘50인 이상’ 규모 기업은 59.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규모기업에서 전문가의 도움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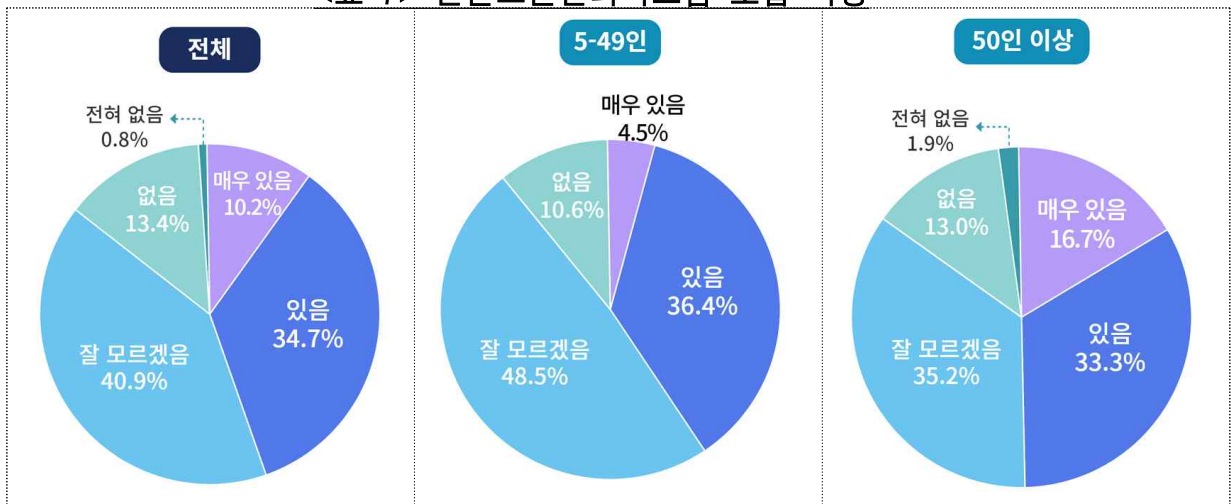
- 5-49인 : ‘필요’(47.0%)(‘매우 필요’(6.1%), ‘필요’(40.9%)) > ‘잘 모르겠음’(34.8%) > ‘불필요’(18.2%)
- 50인 이상 : ‘필요’(59.2%)(‘매우 필요’(18.5%), ‘필요’(40.7%)) > ‘잘 모르겠음’(20.4%) > ‘불필요’(20.4%)

<표 6>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외부전문가 도움 필요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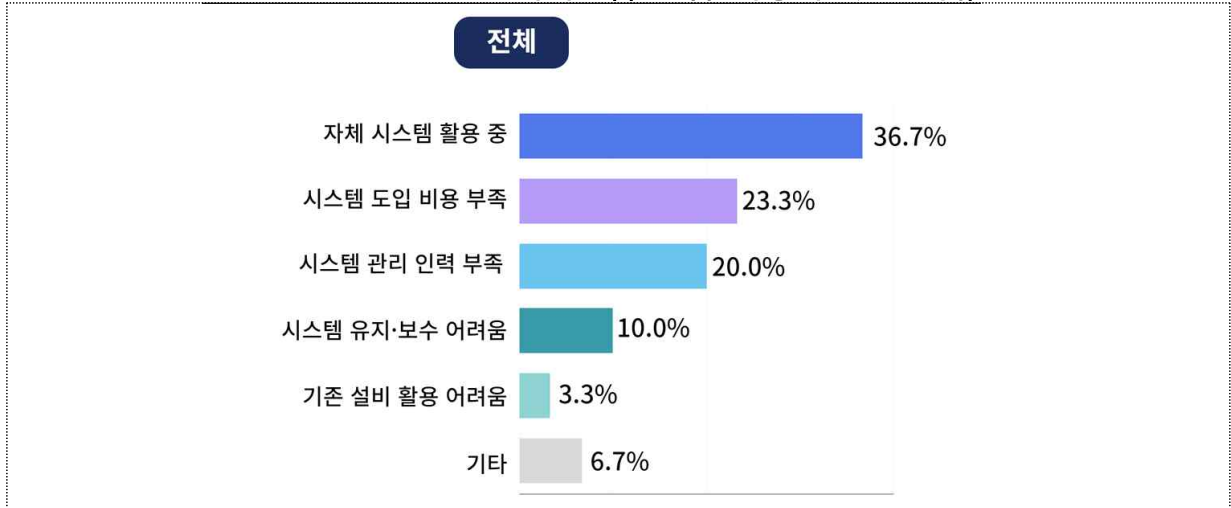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제공된다면 응답기업의 44.9%(‘있음’(34.7%), ‘매우 있음’(10.2%))는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반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기업 40.9%, ‘도입 의향 없는’ 기업은 14.2%(‘없음’(13.4%), ‘전혀 없음’(0.8%))로 나타남.
- 기업 규모별로는, ‘50인 이상’ 규모 기업은 50.0%, 5-49인’ 규모 기업은 40.9%가 ‘도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또한, ‘5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16.7%가 시스템 도입 의향이 ‘매우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7>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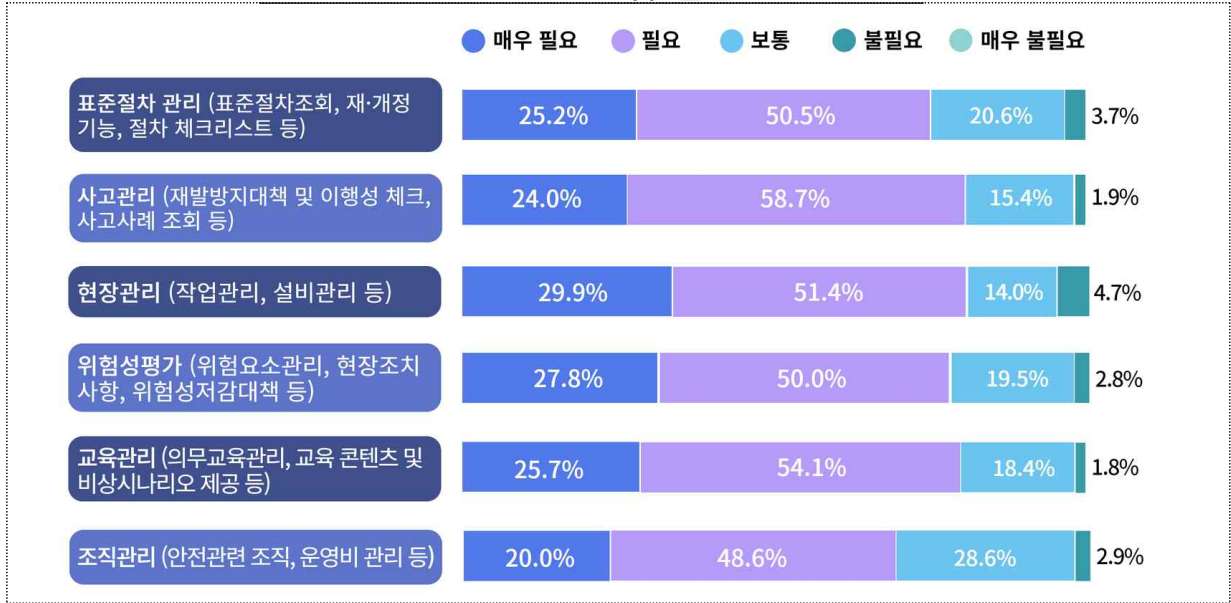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14.2%)은 그 이유로 ‘자체 시스템 활용 중’(36.7%)을 가장 크게 꼽았음. 다음으로는 ‘시스템 도입 비용 부족’(23.3%), ‘시스템 관리 인력 부족’(20.0%), ‘시스템 유지·보수 어려움’(10.0%), ‘기존 설비 활용 어려움’(3.3%), 기타(6.7%) 순이었음.

<표 7-1>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도입 의향이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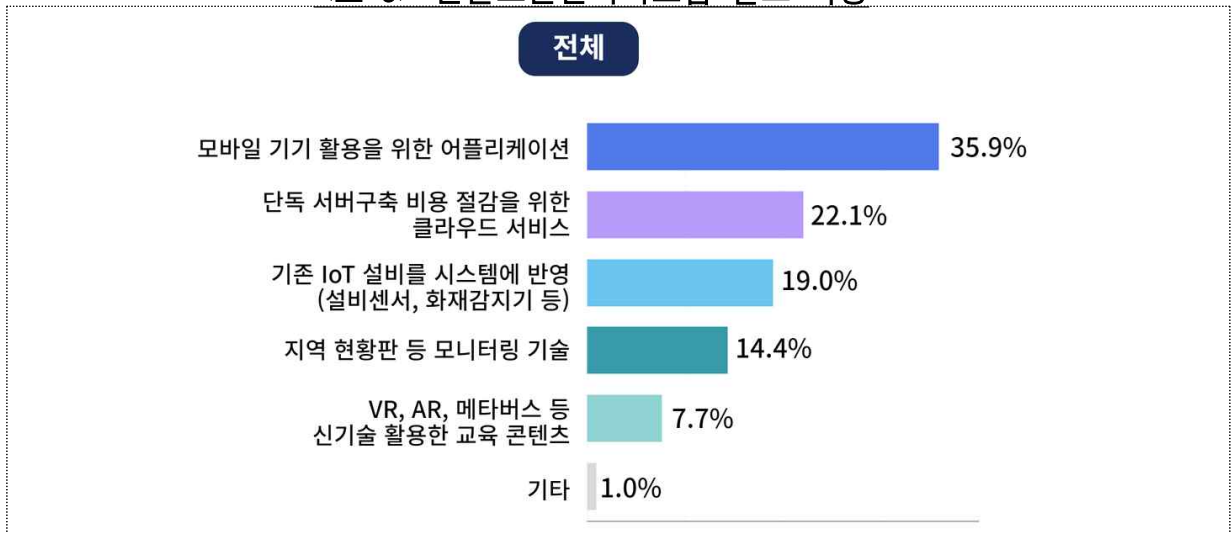
-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콘텐츠로는 표준절차 관리, 사고 관리, 현장 관리, 위험성 평가, 교육 관리, 조직 관리 모든 분야에서 기업이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표준절차 관리(표준절차조회, 재·개정 기능, 절차 체크리스트 등)」 ‘필요’(75.7%) (‘매우 필요’(25.2%), ‘필요’(50.5%)) > ‘보통’(20.6%) > ‘불필요’(3.7%)
  - 「사고관리(재발방지대책 및 이행성 체크, 사고사례 조회 등)」 ‘필요’(82.7%) (‘매우 필요’(24.0%), ‘필요’(58.7%)) > ‘보통’(15.4%) > ‘불필요’(1.9%)
  - 「현장 관리(작업관리, 설비관리 등)」 ‘필요’(81.3%)(‘매우 필요’(29.9%), ‘필요’(51.4%)) > ‘보통’(14.0%) > ‘불필요’(4.7%)
  - 「위험성 평가(위험요소관리, 현장조치사항, 위험성저감대책 등)」 ‘필요’(77.8%) (‘매우 필요’(27.8%), ‘필요’(50.0%)) > ‘보통’(19.5%) > ‘불필요’(2.8%)
  - 「교육 관리(의무교육관리, 교육 콘텐츠 및 비상시나리오 제공 등)」 ‘필요’(79.8%) (‘매우 필요’(25.7%), ‘필요’(54.1%)) > ‘보통’(18.4%) > ‘불필요’(1.8%)
  - 「조직 관리(안전관련 조직, 운영비 관리 등)」 ‘필요’(68.8%)(‘매우 필요’(20.0%), ‘필요’(48.6%)) > ‘보통’(28.6%) > ‘불필요’(2.9%)

<표 8>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콘텐츠 필요 정도



-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기능 중에서는 ‘모바일 기기 활용을 위한 어플리케이션’(35.9%)이 필요하다는 기업이 35.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단독 서버 구축 비용 절감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22.1%), ‘기존 IoT 설비를 시스템에 반영 (설비센서, 화재감지기 등)’(19.0%), ‘지역 현황판 등 모니터링 기술’(14.4%), ‘VR, AR,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활용한 교육 콘텐츠’(7.7%), 기타(1.0%)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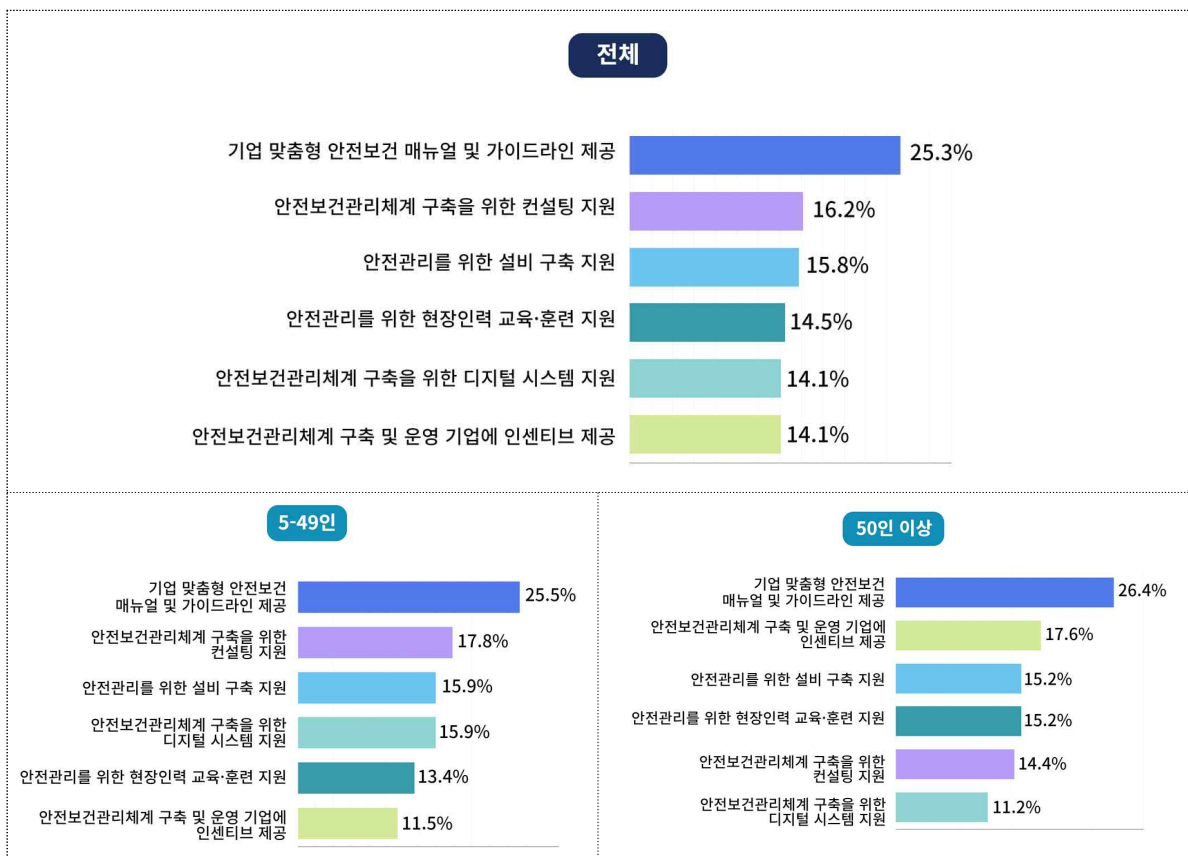
<표 9> 안전보건관리시스템 필요 기능



### 3. 정책 과제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기업 맞춤형 안전보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공’(25.3%)을 꼽았으며, 다음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16.2%),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 구축 지원’(15.8%),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인력 교육·훈련 지원’(14.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지원’(14.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14.1%)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 10>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 기업 규모별로는 ‘5-49인’, ‘50인 이상’ 규모 기업 모두 ‘기업 맞춤형 안전보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공’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한편, ‘5-49인’ 규모 기업에서는 ‘컨설팅 지원’, ‘설비 구축 지원’, ‘디지털 시스템’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음. ‘5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인센티브 제공’, ‘설비 구축 지원’, ‘교육·훈련 지원’과 같이 안전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5-49인 : ‘기업 맞춤형 안전보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공’(25.5%)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17.8%) >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 구축 지원’(15.9%)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지원’(15.9%) >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인력 교육·훈련 지원’(13.4%)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11.4%)
- 50인 이상 : ‘기업 맞춤형 안전보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공’(26.4%)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17.6%) >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 구축 지원’(15.2%) >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인력 교육·훈련 지원’(15.2%)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14.4%)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지원(11.2%)

○ 기타 의견

의 견
■ 교육, 컨설팅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업종별, 규모별 세부 지침 수립 필요
■ 안전 관리 비용(인력 채용, 시설 투자 등)이 크게 증가하여 기업 경영 부담 상승
■ 안전 관련 시스템 구축, 시설 투자 등 비용·세제 지원 필요
■ 처벌 규정 완화 및 세부 기준 마련
■ 안전 관리 기준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인센티브 등 혜택 제공



- 인천지역 기업 127개사를 대상으로 한, ‘인천지역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태 및 수요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인천지역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나, 여전히, 기업 규모별로 안전역량 격차가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인천지역 기업들은 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하여 대다수가 인지하고 있었으나, 응답기업의 51.2%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알고 있는’ 기업은 44.1%에 그쳤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해 정도는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규모 기업은 66.7%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나’, 2024년부터 법 적용 대상인 ‘5-49인’ 규모 기업은 28.8%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함.
- 응답기업의 85.0%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49인’(83.3%), ‘50인 이상’(87.1%) 규모 기업 모두 필요성을 크게 체감하고 있었음. 특히, ‘5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27.8%)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5-49인’ 규모 기업 비중(10.6%)보다 높았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을 살펴보면,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가 문서화’ 되어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36.2%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안전관리 인력·조직·예산 등 관리 체계 구축’(22.1%), ‘안전관리 절차 이행 여부 등 실시간 정보 파악 가능’(4.7%) 순으로 나타남. ‘안전관리 규정, 인력 등 체계 수립 중’인 기업도 22.8%로 조사되었으며, 아직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13.4%를 차지함.
  - ‘5-49인’ 규모 기업의 50.0%(‘안전관리 규정, 인력 등 체계 수립 중’(30.3%), ‘안전보건관리체계 없음’(19.7%))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준비 중이거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업은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 문서화’(36.4%) 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50인 이상' 규모 기업은 81.5%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고 응답했으며, '안전관리 인력·조직·예산 등 관리 체계 구축'(38.9%),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가 문서화'(35.2%) 수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수립해야하는 주요 절차의 수립 현황을 보면, 응답기업은 '표준화된 안전관리 규정·절차'(60.6%),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64.6%), '사고관리 절차'(57.5%), '비상조치계획 및 절차'(62.6%), '정기적 안전보건교육'(84.3%)을 수립·실시한 것으로 조사됨. 하지만, 주요 절차를 '수립 계획 중'이거나 '수립하지 않은' 기업들도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또는 계획단계에서 응답기업의 27.8%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관련 정보 부족'(21.7%), '예산 부족'(15.7%), '사후 관리 어려움'(12.5%), '직원들의 낮은 수용성'(10.7%), '기존 자원 활용 어려움'(10.3%), 기타(1.4%) 이유로 애로를 겪고 있었음.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52.0%('필요'(40.2%), '매우 필요'(11.8%))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음'(26.8%), '불필요'(21.3%) 순으로 조사됨.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규모 기업('필요'(59.2%))에서 '5-49인' 규모 기업('필요'(47.0%))보다 전문가의 도움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제공된다면 응답기업의 44.9%는 '도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반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기업 40.9%, '도입 의향 없는' 기업은 14.2%로 나타남.
  - '50인 이상' 규모 기업은 50.0%, '5-49인' 규모 기업은 40.9%가 '도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50인 이상' 규모 기업에서는 16.7%가 시스템 도입 의향이 '매우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콘텐츠로는 표준절차 관리, 사고 관리, 현장 관리, 위험성 평가, 교육 관리, 조직 관리 모든 분야에서 기업이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기업 맞춤형 안전보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공'(25.3%)을 꼽았으며, 다음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16.2%),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 구축 지원'(15.8%),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인력 교육·훈련 지원'(14.5%),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지원'(14.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14.1%)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인천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 관리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규모 기업들은 ‘5-49인’ 규모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 대응을 위한 준비가 되어있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일정 수준 구축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50인 이상’ 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도 안전관리 규정·절차의 문서화까지만 이루어진 곳이 많아 안전관리 인력·조직·예산 등 관리 체계 구축까지는 준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5-49인’ 규모 기업은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한 준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기업들은 규모별로 안전역량 격차가 커, 규모·업종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음.
- 또한, 인천지역 기업들은 인력, 정보, 예산 등의 부족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애로를 겪고 있음. 먼저, 방대한 안전 관련 법 준수사항을 기업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안전보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기업의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임. 다음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안전 인력 교육·훈련, 설비 투자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함. 더불어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시스템 보급 등 안전 관련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커지면서 경영활동 위축이 우려되므로, 면책규정 신설 등 법령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불안을 해소해야 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 관련 인센티브, 세제 혜택 제공 등 기업이 적극적으로 안전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함.